

의안번호	2205763
의 퇴 인	조배숙의원
회 답 일	2024.12.9.
추 계 번호	24B51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3항 (보험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함.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7조의11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77조의 11(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이하 “육아기간 급여”라 함)를 지급함.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의 지급 요건·수준·기간과 신청·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3	안 제77조의 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 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자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77조의4제1항 또는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7조의 13(준용) 신설	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간 급여”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간 급여”로, “육아휴직”은 “육아기간”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육아기간 급여 지급 요건”으로 봄(제1항)	의무규정
		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보고,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봄(제2항)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확인·육아기간 급여·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장”은 “제5장의4”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각각 “육아기간 급여”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로 봄(제3항)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제3항(보험료)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77조의11(자영업자의 육아기간 급여)	
3	안 제77조의12(자영업자의 출산전후급여등) 신설	
4	안 제77조의13(준용) 신설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출산전후급여 및 육아기간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이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육아기간 급여의 지급대상이 자영업자까지로 확대되며, 출산전후급여의 지급대상도 현행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 자영업자까지 확대됨
 - 육아휴직 급여 : (현행) 근로자 → (개정안) 자영업자 추가
 - 출산전후 급여 : (현행)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개정안) 자영업자 추가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첫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에 대한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둘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육아휴직을 구분해야 하므로, '휴직'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¹⁾를 양육 중인 자영업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넷째,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므로²⁾,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재하여 장래에 발생할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할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